

노동자의 건강한 여름나기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노동자는 152명에 이르렀고 이 중에서 23명은 사망했다. 온열질환 산재는 7~8월에 주로 발생했는데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폭염이 시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그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을 참고해 사업주가 폭염 대비 취할 조치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폭염 대비 조치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 노출 장소의 작업으로 열사병 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절한 휴식 등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노동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일부 사업장에서 그늘막을 설치한 것으로 폭염대비 조치를 다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기 어렵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업무환경에 맞추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업 등 옥외 작업 시 폭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폭염대비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그늘’, ‘물’, ‘휴식’이다. 따라서 옥외 작업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과 가까운 곳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옥외 작업 노동자에게 상시적으로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작업 도중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 등에 따라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및 업무조정을 해야 한다. 업무조정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업무시간대 조정, 업무강도·업무량 등의 조정 등이 있다.



실내 작업 시 폭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실내 작업은 폭염과 무관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실내 작업 중에도 발생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실내 작업도 예외가 아니다. 실내 작업장에서는 기온, 습도 등을 상시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온도계·습도계 등을 비치하고 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풍기·선풍기·에어컨 등을 이용해 적절한 기온을 유지해야 한다. 주간에는 폭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다가 야간에는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야간작업의 경우에도 적절한 실내 기온이 유지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과 휴식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옥외 작업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 필요!



온열질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은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따라서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작업 전후에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응급조치와 더불어 119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신속한 응급 조치, 신속한 병원 이송 등을 위해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노동자들에게 숙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